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3294호

2026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

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. 11. 19.

서울특별시시장

1. 사업개요

○ 사업명 :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

※ 마을기업 :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(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)

○ 지원규모(안) : 신규(1차) 2개, 재지정(2차) 4개, 고도화(3차) 4개

※ 우수·모두에는 추후에 행안부 계획 통보 예정

※ '26년 예산편성 및 자치구 공모 결과, 행안부 심사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지원내용 : 사업비 지원

- 신규:기업별 최대 5천만원, 재지정:기업별 최대 3천만원, 고도화:기업별 최대 2천만원

※ 자부담 비율 : 보조금의 20% 이상(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% 이상)

○ 사업접수 : 2025.12.1.(월) ~ 2025.12.8.(월) 18:00까지

- 공고기간 : 공고일부터 ~ 2025. 12. 8.(월) (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 게재)

○ 접수방법 :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

○ 지정요건 : 지역성, 기업성, 공동체성, 공공성

- **[지역성]**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읍·면·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
지역성 지정요건	
1	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
2	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
3	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4	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- 지역주민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 의 근로자이어야 함 -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
- **[기업성]**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,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

기업성 지정요건	
1	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
2	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-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, 인적·기술적 역량*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* 회원의 경력·경험, 사업에 필요한 인·허가, 자격증 보유
3	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-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(단,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)

- **[공동체성]**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공동체성 지정요건	
1	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-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과 법인 회원(출자자)이 동일해야 함 -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-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

2	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※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
3	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4	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
5	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(출자자)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(균등)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이고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의 지분 합은 50% 이하여야 함 * 특수관계인 :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·자매

– **[공공성]**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

공공성 지정요건	
1	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·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2	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, 일자리 및 소득 창출,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3	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
4	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주민총회,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·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
5	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-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

2. 신청자격

☐ 공통

○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

※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

※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이고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의

지분 합이 50% 이하여야 함 * 특수관계인 :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·자매

○ 지역(읍·면·동 기준)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
- ※ 지역주민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,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
- ※ ‘읍·면·동’(행정동 기준)을 기본으로 하나,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가 확대가 필요한 경우, 예외적으로 ‘사·군·구’까지 확대하고 주민(사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8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
○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

- 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,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
- 본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
(단,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)

○ 보조금의 20%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(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% 이상)

※ 청년 마을기업

- ▶ 정의 :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·운영하는 마을기업, 「청년기본법」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(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)
- ▶ 혜택 : 자부담 경감(20%→10%), 지역주민비율완화(70%→50%), 심사 가점(최대 3점)
- ▶ 지정 요건 : 지역주민 5인 이상을 포함하고, 지역주민비율(50%이상)과 청년회원비율(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, 30%~50% 이상)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<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>

- √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(20%)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% 적용,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

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*	15% 미만	15%~20% 이하	20% 초과
청년회원비율	30%	40%	50%

* 산정 기준 :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(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.mois.go.kr 참고)

예) '26년 신청 시, '25.12.31. 기준 적용

- ※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, 휴학생 또는 졸업생(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)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(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수)
- ※ 청년마을기업으로 2,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□ 1회차(신규) 마을기업

- 공통자격을 갖추고, 접수기한 전까지 입문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
 -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입문교육(7시간)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
 - ※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자치구 적격 검토 기한인 12.25.(목) 이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

□ 2회차(재지정) 마을기업

- 공통 자격을 갖춘 1회차 지정 마을기업으로, 접수기한 전까지 전문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
 -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교육(4시간)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
 - ※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자치구 적격 검토 기한인 12.25.(목) 이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

□ 3회차(고도화) 마을기업

- 공통 자격을 갖춘 2회차 지정 마을기업으로, 접수기한 전까지 전문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
 -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교육(4시간)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
 - ※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자치구 적격 검토 기한인 12.25.(목) 이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

<참고: 가점사항>

심사항목	배점	구분	심사지표
가점	최대 5	3 (택1)	■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(중도포기·취소한 경우 제외) ■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·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(대상사업 : 참고) ■ 상용근로자수 : (3) 5인이상 (2) 4~2인, (1) 1인
		2 (택1)	■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■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
		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	

3. 제출서류 [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 서식 사용, 변경 불가]

구분		신청 서류	
기본 서류	공통	① 사업신청서(붙임 2. 신청서식 1-1, 1-2, 1-3 선택 제출) ② 회원 명단(붙임 2. 신청서식 2), 법인등기부등본[공모마감일('25.12.8.)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], 법인 정관,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(자부담 내역 정리)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※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과 법인 회원(출자자)은 동일하여야 함	
		1회차	입문교육 이수 확인서
	추가 (회차별)	2회차	전문교육 이수 확인서, 실적보고서(전년도), 정산서류(1회차), 재무제표(전년도)
		3회차	전문교육 이수 확인서, 실적보고서(전년도), 정산서류(2회차), 재무제표(전년도)
기타 증빙 서류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[공모마감일('25.12.8.)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]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(계약기간 명시)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: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)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(법인 회의록, 보조금 관련 서류 등)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(붙임 3 서식)		

※ 사업신청서는 한글(hwp 또는 hwpX)파일로 제출

※ 2·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(e-나라도움)하고 그 결과를 '적격검토 보고서'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(시행지침 p.21 참고)

※ 단, 2025년 지정 신규 마을기업은 사업비(보조금) 지원 없음에 따라 마을기업이 기초자치단체에 최종 승인받은 사업 및 예산계획으로 자부담을 편성하고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 기준에 맞춰 집행(시행지침 p.38~48 참고) *자부담 신규 사업비(보조금) 20% 미적용, 자율 편성

※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(1회차 입문교육, 2회차 전문교육)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서울시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(미제출 시 심사 제외)(시행지침 p.21 참고)

4. 유의사항

□ 신청유형

- 사업 성격에 따라 ①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기업 ③ 마을 관리형 마을기업으로 구분되는데,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 (시행지침 p.12 참고)
 - 지역자원 활용형 : 사업계획서에 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
 - 사회서비스제공형/마을관리형 : 정관,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·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, 사업비의 50%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

□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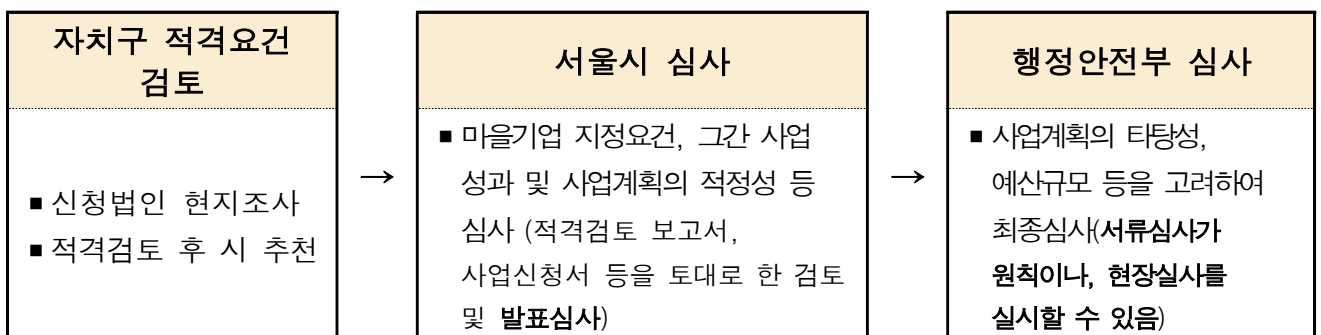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(신규·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, 재도약, 우수 및 모두에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)
- 그 외 지자체가 중복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5. 참고 사항

- 신청기업은 모든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까지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자치구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신청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 반려 처리
 -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
 -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,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 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-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」을 적용함
- ※ 신청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(☎ 02-2088-6140)로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

6. 추진일정 ※ 상기 일정 및 심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- 자치구 접수('25. 12월) → 서울시 심사('26. 1월) → 행정안전부 심사('26. 2월)



7. 접수처

○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

자치구	담당부서	연락처	자치구	담당부서	연락처
종로구	일자리경제과	2148-2326	마포구	고용협력과	3153-8555
중구	일자리경제과	3396-5293	양천구	일자리경제과	2620-4824
용산구	일자리정책담당관	2199-4533	강서구	일자리정책과	2600-6364
성동구	일자리정책과	2286-6387	구로구	일자리지원과	860-2125
광진구	일자리청년과	450-7246	금천구	자치행정과	2627-1992
동대문구	청년정책고용과	2127-4927	영등포구	일자리경제과	2670-3961
종랑구	기업지원과	2094-1302	동작구	경제정책과	820-9324
성북구	지역경제과	2241-3895	관악구	일자리벤처과	879-5754
강북구	일자리지원과	901-2653	서초구	일자리경제과	2155-8740
도봉구	지역경제과	2091-2886	강남구	일자리정책과	3423-5594
노원구	일자리경제과	2116-0685	송파구	경제진흥과	2147-4922
은평구	일자리경제과	351-6828	강동구	일자리정책과	3425-5825
서대문구	청년정책과	3140-8041			